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38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 강유정·진선미·박 정

김영환 • 박희승 • 정을호

박민규 • 정진욱 • 김용민

서영교 · 김한규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행물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다른 콘텐츠의 원전으로 자주 활용되며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원천콘 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출판업계는 콘텐츠 제작비용, 재료비, 인건비의 상승이라는 원가 상승과 성인 1인당 종합독서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이에 간행물을 활용한 최종 결과물인 영상콘텐츠에는 제작비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간행물 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소극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이라 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행물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하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 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 제작비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이 처음으로 출판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간행물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행물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간행물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25조의8(간행물 제작비용에 대 |
| | 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
| | 정하는 내국인이 「출판문화산 |
| | 업 진흥법」 제2조제3호부터 |
| |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간행물 |
| | 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 |
| | 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출 |
| | 판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 |
| |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행물 |
| | 제작비용의 100분의 5에 상당 |
| | 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
| | 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이 |
| | 처음으로 출판된 과세연도의 |
| |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 <u>한다.</u> |
|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
| |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
| | <u>야 한다.</u> |
|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간행물 |
| |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 |
| |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

로 정한다.